



제340회 임시회
2015.06.10.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이 광희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15년 06월 01일

○ 회부일자: 2015년 06월 02일

3.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학교급식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노력을 교육감의 책무로 함.(안 제3조)
- 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해마다 정기 및 수시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사전검사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검사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방사능오염 식재료 검사결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규정함(안 제7조)
- 바. 학교급식 관계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8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3조에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노력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에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급 학교별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해마다 정기 및 수시로 안전성 검사를 사전검사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검사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방사능오염 식재료 검사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의 협조 사항을, 안 제8조는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의 교육·연수 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이 확대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방사능 뿐 아니라 잔류농약, 중금속 등에 오염된 식재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과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전 방사능 등 유해물질 사전검사를 강화하고 검사결과 사후조치 등 방사능 검사체계를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둔 이번 조례제정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검사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실효성 있는 식재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항목을 명확히 하고, 학부모나 학교직원 검사의뢰 반영 방법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학교급식위원회위원의 심의기능과 역할이 실질적인 실효성을 담보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이 시행 규칙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 계 법 령 발 췌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식품위생법

제15조(위해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식품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식품 등 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 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금지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시적 금지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사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위해가 없다고 인정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에 따른 위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식품의 위해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나 위해와 관련된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로서 제15조에 따른 위해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6.7.]

제90조의2(정보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 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5.21.>

1.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사용후 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裂生成物)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비용 추계서

1. 비용추계내용

○ 재정수반요인

-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예산 추계

2. 비용추계

○ 2015년 본예산에 세워져 총 50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4,5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매년 확대 예정)

구분 \ 연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방사능검사비	4,000천 원	4,400천 원	4,800천 원	5,200천 원	5,600천 원
검체물품비	500천 원 (50건)	550천 원 (55건)	600천 원 (60건)	650천 원 (65건)	700천 원 (70건)
합 계	4,500천 원	4,950천 원	5,400천 원	5,850천 원	6,300천 원

3.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기초자료 및 세부내역

- 2015년 수산물 방사능 검사(매년 확대 운영 예정) : 4,500천원
 - 방사능 검사비(검사기관 : 충북보건환경연구원)
 $50\text{건} * 80,000\text{원} = 4,000\text{천원}$
 - 검체 물품비
 $50\text{건} * 10,000\text{원} = 500\text{천원}$

4. 작성자 : 체육보건급식과 식품위생 6급 김영숙(290-2163)